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 10. 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7. 12. 26.>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 4. 6.]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 가. 「주세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나. 「주세법」 제5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전문개정 2009. 4. 6.]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09. 4. 6.>]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포장과 법률

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기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19., 2010. 12. 20., 2011. 3. 22., 2013. 11. 20., 2014. 1. 28., 2014. 7. 16., 2015. 11. 26., 2016. 1. 19., 2016. 12. 30., 2017. 1. 26., 2018. 12. 31., 2019. 7. 2.,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

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제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포장과 법률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몽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 그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

[시행일: 2023. 1. 1.] 제18조제7호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14.]

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4. 14.>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삭제 <2013. 11. 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삭제 <2013. 11. 20.>

8. 그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2020. 4. 14.>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21. 5. 25.>

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4. 6.]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



포장과 법률

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전문개정 2009. 4. 6.]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 다음 호에 계속 >